

2023학년도

학교생활 인권규정



동화중학교

차 례

제1장 총칙 1

제2장 학생의 권리 1

제3장 학생생활 3

제4장 학생자치활동 6

제1절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2절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3절 학급자치회 규정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7

제1절 총칙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절 학생의 선도

제4절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6장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개정..... 23

부 칙 26

붙 임	
제1호 동화중학교 교복기준	제9호 서식 후보자(사퇴) 공고
제2호 서식 위원 공고	제10호 서식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제3호 서식 선거일 공고	제11호 서식 투표 용지 예시
제4호 서식 투표자 명단	제12호 서식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제5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13호 서식 개표 결과
제6호 서식 추천장	제14호 서식 선거록
제7호 서식 후보자 등록 공고	제15호 서식 당선자 공고
제8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동화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동화중학교 학생들이 올바른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내면화시켜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와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⑦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 ⑧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폐할 것을 안내한 후 철폐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폐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둔다.
- ②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개정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학업중단속려제 시행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속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속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속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3장 학생생활

본 규정은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생활습관에 중점을 둔다.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흥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ライター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생 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 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 ⑤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⑦ 제6항과 같이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물건의 수거)

-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7조(안전대책)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규정과 외부인 출입 시 신분확인 절차 거치도록 하며, 출입증이 없으면 즉시 퇴교 조치함으로써 학생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제18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19조(미인정결석·지각·조퇴·결과) 미인정결석 및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1일 미인정결석하면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밝힌다.
- ② 3일 이상 미인정결석하면 학부모에게 ‘내교통지서’를 송부하여 학부모와 상담한다.
- ③ 미인정지각, 조퇴, 결과를 상습적으로 반복할 때에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20조(교복)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항상 청결히 하고 외모를 단정히 한다. 교복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붙임 제1호> ‘동화중학교 교복착용 사진’을 참조한다.

① 겨울철 : 지정된 동복

가. 상의 상단 가슴 주머니 위에 탈부착 할 수 있는 이름표를 달고, 주머니 중앙에 교표를 단다.

나. 여학생은 바지와 치마를 혼용할 수 있다.

다. 동복 착용 시 상의는 와이셔츠 및 흰색이나 검정색 폴라 티를 입을 수 있다.

라. 학생은 패딩이나 코트 등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마.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② 봄, 가을 : 춘추복 (남학생 : 셔츠, 조끼, 여학생 : 브라우스, 조끼)

가. 조끼 착용 시 와이셔츠와 동복 바지(치마)를 착용하되 와이셔츠를 바지(치마)에 넣어서 입는다.

나. 조끼에 교표와 이름표를 단다.

③ 여름철 : 지정된 하복

가. 상의 상단 가슴 주머니 위에 이름표를 달고, 주머니 중앙에 교표를 단다.

나. 하복 상의는 바지(치마) 밖으로 내어 입는다.

④ 교복 길이나 폭 등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⑤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남학생의 바지통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접어 올렸을 때 무릎까지 오는 것으로 한다.

⑦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개인적으로 짧게 별도의 수선을 하지 않는다.

⑧ 교내에서는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 한다.

제21조(신발 및 양말) 신발은 다음과 같이 착용한다.

① 굽이 높은 신발 착용은 금한다.

② 구두는 허용하나 운동화 착용을 권장한다.

③ 운동화는 체형에 맞는 운동화를 신는다.

④ 실내에서는 운동화 또는 슬리퍼를 착용한다.

제22조(책가방) 책가방의 형태 및 크기와 색상은 다음과 같다.

① 형태 : 등에 메는 배낭형의 가방으로 한다.

② 크기 : 공책과 교과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③ 메신저백, 크로스백은 허용하되 핸드백형 가방, 손가방 형은 금한다.

제23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교에서 통신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가. 자율적으로 담임 선생님께 맡길 수 있으며 종례시간에 찾아간다.
나. 통신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사용이 예정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놓는다.
다. 통신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관리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 ② 수업 중 통신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 ③ 교내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4조(두발) 학생 두발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의 두발은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 ② 학생의 두발은 교복(제복)에 어울리는 범위 내에서 단정하게 한다. (여학생 올림머리도 허용)
- ③ 과도한 펌이나 염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화장 및 용모)

- ① 학생은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다. 단,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제4장 학생자치활동

제1절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26조[명칭] 이회는 ‘동화중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7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

시민 자질을 기르는데 있다.

제28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유예 중인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학생총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29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각 부서 부장과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 나.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 다.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가.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 나.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 다.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라.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마. 대의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 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30조[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가. 각 부는 질서예절부, 교육환경부, 대외홍보부, 행사준비위원회, 고민해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부서를 두며,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나.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결산보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31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가.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나.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다.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라.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마.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바.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1인(3학년)

② 각 부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 이상(2, 3학년)

③ 각 부의 부원 1인(1, 2, 3학년)

④ 선거관리위원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3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④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34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은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 학생회장 부회장 2학년 각 1명씩 동반 입후보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다. 비밀 투표로 선출,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 부장, 차장, 부원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 부원은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하며 학생자치회의 협의로 선출한다.

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한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제2항 가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 부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선거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0월~12월 중 선거로 선출한다.

④ 임기는 당선증 전달식 직후부터 차기 해 학년도로 한다.

제35조[자격 제한]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징계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회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구성원의 합의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의한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다.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1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36조[학생자치회 임원의 해촉]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자치회 재적수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을 받은 학생
- ② 교칙위반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제37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로 지정한다.
-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가.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나.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다.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38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에 적용한다.

제40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단 구성에서 자치적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당 학년도 학생자치회 중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 학년도 전교학생자치회장, 전교학생자치회 부회장을 포함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 나.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 다.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 라.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41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2조[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43조[투표자 명단 작성]

-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44조[후보자 자격]

-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45조[후보자 등록]

-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5호 서식) 1부
나. 추천장(붙임 제6호 서식) 1부
다. 공약서 1부
- ②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무효와 사퇴]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40조 제1,2항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기간의 시작일 0시부터 종료일24시까지로 한다.
-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등록한 매체(계정)만 이용 가능하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5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선거운동 도우미는 같은 기간 동안 여러 후보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48조[후보자 홍보포스터]

-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49조[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50조[어깨띠·피켓 등]

-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51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 가. 경고사유의 행위
 - 1. 후보자간 다툼
 - 2.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3.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4.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 나.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2.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3.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경고가 주어지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일에 그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52조[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53조[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붙임 제11호 서식)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하며,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사전 기표교육을 실시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자치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2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54조[개표]

-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자치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2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가.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나.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다.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 표를 한 것
 - 라.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마. “㊤”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가.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 표를 한 것
 나.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다. “㊤”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3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4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55조[당선인 결정]

-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중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회장,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당선자 공고(붙임 제1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56조[재선거]

-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가.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그만두었을 때
 나.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7조[보궐선거]

- 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후보가 없을 경우 1인 체제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8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59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60조[보칙]

-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절 학급자치회 규정

제61조[명칭] 이회는 ‘동화중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

제62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63조[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64조[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을 두며, 학생자치회에 준하여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며, 각부 부장 1인을 선출한다.
- ③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 학급회장, 부회장 의견, 담임교사의 자문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65조[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급임원은 무기명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② 각 반의 학급자치회 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생 중 2~3명으로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임원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가. 이름을 기입하지 않은 용지
 - 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이름을 기입한 용지
 - 다. 이름을 알아볼 수 없는 용지
 - 라. 후보자의 별명을 기입한 용지
 - 마. 선관위가 무효로 인정하는 용지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가. 후보자의 이름을 여러 번 기입한 용지
 - 나. 기입한 이름이 번진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⑥ 투표를 마치면 학급선거관리 위원은 즉시 개표를 한다.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 학생이 선출되고, 선출된 학생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수여한다.
- ⑦ 위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자치회 규정은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66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제67조[학급 임원의 해촉]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급자치회 회원 과반수의 요구과 의결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 ①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 ②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68조[임원의 임기]

-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단, 같은 학년에 중임은 금한다.
-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한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보

궤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9조 [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 나.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 다.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라.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급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급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총칙

제70조 [명칭] 이 규정은 ‘동화중학교 학생선도 규정’ 이라 한다.

제7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73조 [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를 둔다.

제74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②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④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 ⑤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5조[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가.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위 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라.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③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6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7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8조[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79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0조[간사]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 ③ 소위원회(소생활교육위원회, 학년생활교육위원회)에서 약식 징계를 금지한다.

제8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제82조[징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가. 학교 내의 봉사
 - 나. 사회봉사
 - 다. 특별교육 이수
 -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3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가.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가.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2.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3.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가.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로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제84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제84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선 도 처 리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4	교사에게 폭언 및 신체적 물리력을 가한 학생	○	○	○	○
	5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준법	6	공중도덕 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10조~제23조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학생	○			
	7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8	학교 단체행사에 불참한 학생	○			
	9	수업준비, 청소, 주변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10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12	경찰서에 구속 후 석방된 학생	○	○		
	13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1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15	외설적인 표현이 담긴 도서 및 전자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1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17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18	학교 내의 봉사를 징계 받고 같은 규칙을 위반한 자	○	○	○	
	19	사회봉사의 징계를 받고 같은 규칙을 위반한 자			○	○
20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고 같은 규칙을 위반한 자	○	○			
21	불장난, 방화 등으로 인해 시설을 파손하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학생	○	○	○	○	
22	불장난, 방화 등으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학생					
수업	23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24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25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2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27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28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29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구분	항	제84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선 도 처 리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근태	30	미인정 외출을 한 학생	○	○		
	31	미인정결석·지각·조퇴·결과를 한 학생	○			
	32	미인정결석·지각·조퇴·결과를 2회~5회 한 학생	○	○		
	33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34	미인정결석·지각·조퇴·결과가 5회 이상인 학생	○	○	○	○
약물	35	교내·외에서 담배(전자담배 포함) 또는 주류를 소지하거나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36	환각제등을 사용한 학생	○	○	○	○
	37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학생				○
퇴폐 행위	38	도박을 한 학생	○			
	39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4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41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		
	42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	○		
금품	43	물품을 절도한 학생	○	○	○	○
	44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 및 각출한 학생	○	○	○	○
집단 행위	45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46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47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48	동맹휴학을 선도,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사이버 범죄	49	사이버 범죄 행위(사기, 음란물 게시,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명예훼손, 명의 도용, 불법복제 등)에 가담한 자	○	○	○	○
	50	카메라폰으로 불필요한 장면, 연출 장면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행위를 한 자	○	○	○	○
기타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선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선도 기준 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85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87조[사안설명]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8조[심의절차]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개회
- ② 심의과정 설명
- ③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④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⑤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⑥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⑧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89조[선도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사실과 일정 그리고 선도조치가 확정된 후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1조[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

제9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3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9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95조[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인 9명(교원3명, 학생3명, 학부모2, 전문가대표1)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8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9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00조[연수 및 교육]

- ①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02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시행)

1. 본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8년 7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붙임 제1호>

동화중학교 교복 기준

1. 동복

남학생	여학생	
		 <p>(선택사항)</p>
<p>※ 상의 : 남색, 회색과 빨간색 체크 ※ 셔츠 : 흰색, 소매 회색 ※ 바지 : 짙은 회색</p>	<p>※ 상의 : 남색, 회색과 빨간색 체크 ※ 셔츠 : 흰색, 소매 회색 ※ 치마 : 밝은 회색 바탕의 빨간색 체크</p>	

2. 춘추복

남학생	여학생	
		 <p style="text-align: right;">(선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끼 : 회색, 목둘레 남색, 빨간색 선 있음 ※ 바지 : 짙은 회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끼 : 회색, 목둘레 남색, 빨간색 선 있음 ※ 치마 : 밝은 회색 바탕의 빨간색 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끼 허리둘레(밑단) 남색, 빨간 띠 없음 ※ 넥타이는 없음, 가디건은 필수가 아닌 선택 ※ 여학생 스타킹은 검정색, 살색, 신지 않음 중 선택 ※ 여학생 바지는 남색이며 필수가 아닌 선택 ※ 남학생 셔츠 허리라인 없음. 셔츠 밖 노출되는 회사 트레이드 마크 없음 		

3. 하복

남학생	여학생
	
<p>※ 상의 : 하늘색 바탕 드라이핏 원단, 카라 남색, 목 뒤 세모 땀받이 박음질 안 보임. 앞섶 단추 있는 쪽 체크는 흰색 바탕 파란색 체크무늬 사선 방향, ※ 하의 : 파란색 반바지, 바지밑단 둘레 흰색 바탕 파란색 체크무늬 커브스 ※ 남학생 여학생 하복 동일</p>	

4. 규정 교복이 아닌 예

- 1) 허리선보다 상의가 짧은 경우(55사이즈 기준 57cm이상)
- 2) 동복 상의 허리선 및 앞뒤에 닳트가 있을 경우
- 3) 치마 형태가 H라인인 경우, DH수가 없는 경우
- 5) 치마 박음질이 엉덩이 둘레선 밑으로 내려온 경우 및 전체 길이를 줄인 경우
-> 치마 주름이 25cm 이하인 경우
- 6) 바지 통을 줄인 경우 (7.5 인치보다 작은 경우)

[붙임 제2호 서식]

위 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동화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위 원 명 단

구 분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임 제3호 서식]

선 거 일 공 고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동화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 보 자 등 록			
선 거 운 동 기 간			
합동소견발표회			
투 표 일			
개 표 일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나.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 다. 공약서 1부.

3. 입후보자격

-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 부회장은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 나. 선거권자 20명이상 3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다. 성적 등의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붙임 제4호 서식]

투 표 자 명 단

학년 반

번 호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제6호 서식]

추천장

▣ 추천후보자

○ 성 명 :

○ 학년·반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선거
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서식 제 6-1호) 1부.

동화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 6-1호)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일련번호	학년 · 반	성 명	서 명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10	학년 반		
11	학년 반		
12	학년 반		
13	학년 반		
14	학년 반		
15	학년 반		
16	학년 반		
17	학년 반		
18	학년 반		
19	학년 반		
20	학년 반		
21	학년 반		
22	학년 반		
23	학년 반		
24	학년 반		
25	학년 반		
26	학년 반		
27	학년 반		
28	학년 반		
29	학년 반		
30	학년 반		

[붙임 제7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동화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회 장 후 보 자				부 회 장 후 보 자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붙임 제9호 서식]

후보자 (등록무효) (사퇴)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무효)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동화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등록무효) (사퇴)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후보자 성명	(등록무효) · (사퇴) 연월일	(등록무효) · (사퇴) 이유

※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붙임 제10호 서식]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의 선거
운동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운동도우미 명단

번호	학년·반	성명	선임·교체	비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 교체시에는 ○○○와 교체라고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동화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1호 서식]

투 표 용 지 예 시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투표		
기 호	성 명 (회장, 부회장)	기 표 란
1	회장: 부회장:	
2	회장: 부회장:	
3	회장: 부회장:	
4	회장: 부회장:	
5	회장: 부회장:	
동화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제12호 서식]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서명)

동화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3호 서식]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	2	3	4	5			

검 열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장

동화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붙임 제14호 서식]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투·개표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 장, 부 회 장 선 거		
선거인수	인		
투표자수	인		
기권자수	인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1		표
	2		표
	3		표
	4		표
	5		표
무 효 투표수			표

4. 당선자 명단

회장 부회장		
기 호	후보자 성명	학년 · 반
	회장	학년 반
	부회장	학년 반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제15호 서식]

당 선 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동화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당 선 자 명 단

회장 부회장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 · 반
	회장	학년 반
	부회장	학년 반

[붙임 제16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학년 · 반	이 름
신 청 자		
이의신청건		
세부 설명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성명 _____(서명)

동화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